
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9.

발 의 자 : 박정현 · 이주희 · 이학영  
복기왕 · 이연희 · 이광희  
박균택 · 박홍배 · 문진석  
박민규 · 이강일 · 염태영  
김한규 · 양부남 의원  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정부는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생태계 보전이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을 활용한 관광, 생태관광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음.

그러나 댐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경관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거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음.

이로 인해 댐 주변지역 거주 주민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임.

따라서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(안 제43조 제1항).



법률 제 호
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
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등을”을 “및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